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8월 19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 라. 상정일자: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2021. 8. 3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 가. 제안이유
 - 사업내용이 우수하여 올바른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선도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2조)
 -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및 지정(안 제3조 ~ 제4조)
 -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안 제5조 ~ 제6조)
 -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및 지정증 회수(안 제7조 ~ 제8조)

○ 모범사업자 지원(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안건은 사업내용이 우수하여 올바른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및 공공 복리 증진을 선도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고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2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및 지정증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모범사업자를 지정·운영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홍보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직업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구민들에게는 질 높은 자동차관리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81 호
----------	---------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사업내용이 우수하여 올바른 자동차관리사업 문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선도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2조)
- 다.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및 지정(안 제3조 ~ 제4조)
- 라.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안 제5조 ~ 제6조)
- 마.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및 지정증 회수(안 제7조 ~ 제8조)
- 바. 모범사업자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1. 1. 21. ~ 2. 5. / 1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 지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정증 등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1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2.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 가. 규격 : 50cm(가로) × 30cm(세로)
- 나.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지정번호:

지정기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_____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영 등 포 구 청 장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노란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영등포구의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관리사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남/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지정 [] 재지정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 지정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연번	지정번호	지정일자	상호	업종	대표자	소재지	비고